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 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뺄 수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함.

2. 주요내용

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5조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안 제123조의3부터 제123조의8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자동차 부품의 정비가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트렁크 또는 트렁크 리드
나. 후 범퍼 또는 후문짝
다. 기타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체 및 차대
2.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는 차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정

비(일부 정비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의 정비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을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내압용기
2.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의 전기·전자장치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나.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장치

제49조의4제1항 중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을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으로 한다.

제57조의15제1항제2호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 제목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을 신설한다.

제115조제2항제3호 중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을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 가격“으로 하고,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을 “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8조제8항“을 “법 제58조제10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을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 및 제123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

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매매업“을 “매매업자“하고, 제2호 중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정비업자“으로 하며, 제3호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가“를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으로 “전송하여야“를 “전송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매매업“을 “매매업자“로, 제2호 중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정비업자“로 하고, 제3호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일부터 3일 이내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는“을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으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을 “경우“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아래와 같이 하

고,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3항 중 후단을 삭제하고, 제5호 중 "법 제58조의4"을 "법 제58조의5"으로 한다.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 및 이 규칙 제123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제2절의2(제123조의3부터 제123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제123조의3(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고)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58조제2항 전단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

③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서(신규·변경·폐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

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증(신규·변경)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①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성능점검자의 변경

② 제123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서(신규·변경·폐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증(신규·변경)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5(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23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의뢰받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제2

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과 점검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에 따르며, 그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제123조의6(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성능점검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24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별표 24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 검사·정비 관련 단체 및 성능·상태점검 관련 단체

④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은 성능상태점검 교육을 받은 성능점검자에게 별지 제85호의4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7(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록·관리 등) ①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제123조의5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경우:
성능·상태점검 내용

2. 제123조의6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이수현황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사본 및 제123조의5에 따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발행일로부터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123조의8(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4에 따라 제1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 포함되는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

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132조 중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작업”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에 따른“으로 하며, ”작업을“을 ”작업은“으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장치의 무선업데이트(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3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4항제4호“를 ”법 제58조제5항제4호“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제4항 중 ”법 제58조제4항제5호“를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하며, 제5항 중 ”법 제58조제4항제5호“를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제4항에“를 ”이 조 제4항에“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4항제7호“를 ”법 제58조제5항제7호“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라 함은 다음“을 ”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에어백 모듈“로 하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제141조 제1항 중 “법 제58조제5항”을 “법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

차 장치의 수출금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8조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없는 장치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4의3 및 별표 24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제123조의6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10시간 이상	• 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중고차성능·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관련	2시간 이상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 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기기	1시간 이상	• 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실무	3시간 이상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실습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작성 요령 • 정비이력, 튜닝이력, 보험이력(전손 등), 특별이력(화재 및 침수), 용도변경(렌트, 영업용), 리콜사항 확인 요령 등

나.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4시간 이상	• 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중고차성능·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

		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관련	1시간 이상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 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기기	1시간 이상	· 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실무	2시간 이상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실습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작성 요령 · 정비이력, 튜닝이력, 보험이력(전손 등), 특별이력(화재 및 침수), 용도변경(렌트, 영업용), 리콜사항 확인 요령 등

2.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이론 교육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기	이론 및 실습교육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실무	

비고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기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실무는 실습교육이 50%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2.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4]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127조제1항제2호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구분	기 준
가. 사무실	30㎡ 이상(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강의실	45㎡ 이상
다. 실습실	100㎡ 이상
라. 전산시스템	인터넷 교육 신청 및 접수, 출·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 및 ·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마. 실습장비	1) 전기자동차 1대 이상 2) 내연기관자동차 3대 이상(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각 1대 이상) 3) 전기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을 위한 검사기기 및 안전장비 1조 이상 4) 별표 22에 따라 성능 · 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 장비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책상 · 의자 및 빔 프로젝터 · 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기준

- 가. 교육업무 담당 직원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나. 전임강사는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다. 강사의 자격기준

교육과목	기 준	인원
1) 인성교육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 업무 · 연구 경력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2)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정비 및 중고차성능 · 상태점검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연구 · 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이상
3) 손해배상 책임 관련	가) 자동차 관련 사정분야 업무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자동차 관련 사정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보험사에서 자동차 관련 보험업무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4)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기 및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실무	가)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동차정비업무, 자동차검사업무, 또는 성능 · 상태점검업무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 · 기계 · 전기 · 전자계열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 부교수 · 조교수의 자격을 갖추고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자동차 관련 법령 강사 겸임 가능)

비고: 외부강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강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별지 제85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2서식] <신 설>

[]신규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 []변경 []폐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장 소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	기존	성 명 주민번호 국가기술 자격번호		
	변경	성 명 주민번호 국가기술 자격번호 (변경시만 사용)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8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5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3 서식] <신 설>

제 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증	
기관(업체) 명칭	
대 표 자 성 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 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상태점검자의 신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법률 제190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어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성능·상태점검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23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② (생략) <신설>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자동차 부품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트렁크 또는 트렁크 리드 나. 후 범퍼 또는 후문짝 다. 기타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체 및 차대 2.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는 차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정비(일부 정비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의 정비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
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
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
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⑥ 제4항

확인해야

----- 않는 -----

 ----- 해야 -----

1. ----- 경우
로 한정하며-----

2. -----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경우로 한정한다----- -----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 ③ (생략)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생략)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법 제2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내압용기
	2.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의 전기·전자장치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나.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장치
제49조의4(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교육 대상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4(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 -----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2. ----- -----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

3. <u>자동차해체재활용업</u>: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 차 (생 략) <신 설>	3. <u>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u>----- ----- ----- ----- 가. ~ 차 (생 략) 4. <u>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u>: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u>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u>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u>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u> ----- ----- --- 전송해야 -----. 1. <u>매매업자</u>: ----- 2. <u>자동차정비업자</u>: -----	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u>자동차해체재활용업</u>: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신 설> ③ <u>자동차관리사업자는</u>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	----- -- 3. <u>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u>: ----- ----- 4. <u>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u>: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일부부터 3일 이내 ③ <u>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u> ----- ----- 경우 ----- ----- ----- -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 및 이 규칙 제123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
--	---	--	--

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
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
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
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
내여야 한다.

1. 삭 제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삭 제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22와 같다.

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
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
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
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
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
해야 한다.

<작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성
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
격조사·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
일 이내에 이루어진 중고자동차
의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하
다.

③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성능
· 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
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
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
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
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
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
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법 제5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 · ⑦ (생략)

<신 설>

<신 설>

③-----

----- . <후단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8조의5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절의2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
제123조의3(자동차성능 · 상태 점검의 신고) ① 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58조제2항 전단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

③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서(신규·변경·폐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증(신규·변경)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

<신 설>

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①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성능점검자의 변경

② 제123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서(신규·변경·폐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

<신 설>

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증(신규·변경)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5(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23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의뢰받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어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과 점검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에 따르며, 그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신 설>

제123조의6(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성능점검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1. 신규교육: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24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별표 24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신 설>

2. 자동차 검사·정비 관련 단체 및 성능·상태점검 관련 단체

④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은 성능·상태점검 교육을 받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별지 제85호의4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7(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록·관리 등)

①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제123조의5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경우: 성능·상태점검 내용

2. 제123조의6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이수현황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사본 및 제123조의5에 따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신 설>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을 포함한다)을 발행일로부터 1 년 간 보관해야 한다.	닝승인대상이 되는 <u>작업</u>을 제외 한다.	----- <u>작업</u>은 ----- ---.
제123조의8(자동차성능·상태점 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 능·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2호서 식의 <u>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 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 정서)</u>를 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보증 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4에 따라 제120 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 포함되 는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보 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 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 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123조의8(자동차성능·상태점 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 능·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2호서 식의 <u>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 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 정서)</u>를 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보증 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4에 따라 제120 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 포함되 는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보 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 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 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 설>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 법 등) ① <u>법 제58조제4항제4호</u> 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 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u>공 개하여야</u> 한다. 다만, 인터넷 홈 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 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 치하는 방법으로 <u>공개하여야</u> 한 다. ②·③ (생 략) ④ <u>법 제58조제4항제5호</u>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 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 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u>법 제58조제4항제5호</u>에 따라 정비업자는 <u>제4항</u>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장치의 무선업 <u>데이트(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 법 등) ① <u>법 제58조제5항제4 호</u>----- ----- ----- ----- ----- <u>공 개해야</u> ----. ----- ----- ----- ----- <u>공개해야</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58조제5항제5호</u>----- -----0----- ----- -----. ⑤ <u>법 제58조제5항제5호</u>----- ----- <u>이 조 제4항</u>에 ----- -----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 ----- ----- <u>작업</u>”이란 다음 각 호----- --- 제55조에 따른 -----	5. ~ 6. (생 략) ④ <u>법 제58조제4항제5호</u>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 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 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u>법 제58조제4항제5호</u>에 따라 정비업자는 <u>제4항</u>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장치의 무선업 <u>데이트(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 법 등) ① <u>법 제58조제5항제4 호</u>----- ----- ----- ----- ----- <u>공 개해야</u> ----. ----- ----- ----- ----- <u>공개해야</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58조제5항제5호</u>----- -----0----- ----- -----. ⑤ <u>법 제58조제5항제5호</u>----- ----- <u>이 조 제4항</u>에 ----- -----

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 해야 한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 관리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 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 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 관리등) ①----- 법 제58조 제5항제7호----- 해야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 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 를 말한다.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 치) ①----- ----- ---란 다음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 조작을 이루는 구성 요소·단 위를 말한다.)	5. 에어백 모듈
②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 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②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 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 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 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 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폐차요청등) ① 법 제58 조제6항-----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5조(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 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 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 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155조 · 제155조의2 (생략)	<u>제58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u> ② <u>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55조의2 · 제155조의3 (현행 제
-----------------------------	--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155조 및 제155조의2와 같음)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8조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없는 장치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	---